



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

1. 사업목적

- 공연장과 공연단체 간 상생협력을 통해 공연단체의 예술적 창작역량 강화와 우수 작품 제작·발표 촉진 및 공공 공연장의 운영 활성화 도모

2. 신청자격 (아래 조건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, 한 가지라도 미 충족 시 행정심의 탈락)

- 관내 문화예술단체 중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단체
 - 연극, 무용, 음악, 전통예술 분야의 창작 및 공연활동을 전문적으로 행하는 공연예술단체
 - 공고일 기준 관내 소재 중인 설립 3년 이상의 예술단체
 - ※ 고유번호증 혹은 사업자등록증의 발급일이 2018. 12. 23. 이전인 단체)
 - 공공 공연장과 상주단체로 협약한 공연예술분야 전문예술단체
 - 단체 설립일 이후 활동 경력이 5건 이상(최근 3년 내 1건 포함)인 단체
 - ※ 단체등록증 내 공식 단체명의 활동경력만 인정(단체 소속원의 개인 활동 경력 불인정)
- 지원신청 부적격 사업
 - 2022 울산예술지원 지원신청 부적격자 공통 안내사항
 - ‘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’과 ‘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’ 중복 선정 불가

3. 사업내용

- 지원분야
 - 연극, 무용, 음악, 전통예술 분야

분 야	지원 대상 단체
연극	연극분야(아동·청소년극, 뮤지컬 포함) 전문극단
무용	한국무용, 현대무용, 발레 등 전문 무용단
음악	실내악단, 교향악단, 합창단, 중창단, 오페라단 등 창작·연주 전문단체
전통	음악, 무용, 연희 등 전통예술 창작·공연전문단체

● 사업기간

- 2022. 3. ~ 2023. 12. (2년 연속지원)

※ 2023년도에 1년차 사업수행 실적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지원 지속여부 결정 및 2년차 지원액 의결

● 지원규모

- 지원금: 연간 6,000만원 ~ 1억 2,000만원(선정된 공연장상주단체로 사업비 전액 교부)

- 공연장 당 상주단체의 수는 장르를 안배하여 1개 권장, 최대 2개 이내로 제한

● 지원조건

- 공연단체와 공연장 간 사전협약(MOU) 체결 및 표준계약서 체결 필수
- 상주단체 참여자 간 계약 시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체결해야 함
- 공연단체와 공연장이 직접 협약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
- 협약서에 포함되는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(재단에서 제공하는 협약양식 사용 원칙)

구 분	세 부 수 행 내 용
공연단체	- 사업관련 제반사항 주체적으로 수행(작품 기획 및 제작 등) - 우수 작품 창작 및 퍼블릭 프로그램 개발 노력 - 사업 관련 공연장과 적극 협력을 통한 성과 제고 - 공연장 가동률 제고 노력 - 보조금 정산 총괄
공연장	- 협약 공연단체의 공연장 사용료 면제 및 사용 우선권 부여 - 협약 공연단체의 창작역량 강화 적극 협력 - 공연장 가동률 제고 노력 - 보조금 정산 시 세부내역 정산 협조

● 대상 공연장

- 울산 소재 공공 공연장으로서, 공연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. (민간 공연장 불가)

※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연장 외에 공공기관(국립학교, 공공 문화재단 등)이 운영하는 공공 공연장 포함
(공연장 등록증 필수 제출)

※ 공연장 등록은 소정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지자체(시·군·구)에 신고하는 절차에 의하며,
공공 공연장은 정부나 지자체의 투자·출자 또는 재정 지원 등으로 설립 및 운영되는 공연장을 의미함

- 상주 가능한 시설을 구비하고 상주단체를 운영하는 공연장에 한함

※ 상주 가능한 시설 요건

- 사무실: 상주단체의 요청 시 사전 협의된 사무 업무 지원이 가능한 공간 및 컴퓨터 사용 협조 등
- 연습실: 상주단체의 요청 시 연습공간을 제공하여야 하며, 별도 연습실이 없을 경우 공연장을 연습공간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(단, 활용계획 제시)

※ 지원 신청 시 상주 가능한 시설(사무실 및 연습실) 구비 현황을 협약서에 명기하여 제출

● 수행 프로그램

구 분	세 부 내 용
필 수 프로그램	● 공연 : 초연 창작품 개발 공연 또는 기존 우수작품 레퍼토리 공연 - 총 3작품 이상(초연 창작 1작품 이상 의무) 공연 - 연간 총 3회 이상 공연(공연횟수 제한 없음) ※ 200석 이하 소규모 공연장의 경우, 총 5회 이상 ● 퍼블릭 프로그램 : 연간 5회 이상 필수 ※ 교육을 중심으로 시행 권장하되, 다음 중에서 자율선택 가능함 - 교 육 : 지역민을 위한 예술교육 프로그램 - 문화나눔 : 소외계층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- 기 타 : 지역특성에 맞는 각종 프로그램
선 택 프로그램 (1개 이상 의무시행)	● 상주단체 간 교류 · 협력 - 지역 내 공연장상주단체 간 교류 - 공연장상주예술단체 페스티벌 참여 - 타 지역(시·도) 공연장상주단체 간 우수작품 상호 교류 ● 조직역량 강화 - 상주단체 단원의 예술적 역량 강화 프로그램 - 공연장 및 상주단체 관계자(기획, 홍보, 마케팅, 회계 등)의 역량강화 프로그램

● 지원내용

- 필수 프로그램과 선택 프로그램 추진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
(제작비, 재료비, 출연료, 사례비, 임차료, 홍보비 등)
-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사업운영비

● 지원금 편성

지 원 항 목	편 성 비 율	편 성 여 부
상주단체 사업비	50~100%	필수
상주단체 운영비	0~30%	선택
공연장 필요경비	0~20%	선택

※ 편성 및 집행불가 항목

- 단체 운영 목적의 자산취득비, 시설비, 수선비, 시설부대비 등 자본적 경비
- 단체 대표자의 급여성 인건비, 당해 보조사업과 무관한 직원의 급여성 인건비 등
- 당해 보조사업 수행과 무관한 단순 업무추진비 성격의 비용 등

● 지원항목

- 상주단체 사업비 : 필수 프로그램과 선택 프로그램 추진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
(제작비, 재료비, 출연료, 사례비, 임차료, 홍보비 등)
- 상주단체 운영비 :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사업운영비
- 공연장 필요경비 :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공연장이 필요로 하는 경비
(프로그램 운영, 작품 제작, 홍보·마케팅, 일용임금 등으로, 경비 집행주체는 공연장상주단체임)

구 분	공통기준	집행 용도	집 행 가 능 항 목
인건비	공연장상주 단체육성지원 사업 직접 관련	상주단체가 필수·선택 프로그램을 추진하는데 필요로 하는 전담인력의 인건비	기획 및 행정인력 인건비
사업 운영비		상주단체가 필수·선택 프로그램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 외의 필요경비	상주공간 사용분에 대한 공공요금, 사무용품 또는 소모성 비품 구입비

4. 공모신청 및 제출서류

● 신청기간

- 2021. 12. 27.(월) ~ 2022. 1. 10.(월)

● 신청방법

-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(NCAS)을 통한 온라인 신청(이메일, 우편, 직접방문 접수 불가)

● 제출서류

- 지원신청서(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(NCAS)을 통한 작성·제출)
- 사업계획서 및 활동실적(지정양식)
- 증빙자료
 - 단체등록증 사본
 - 공연장 등록증
 - 예술단체 활동 증빙 자료
- 공연장-상주단체 협약서(지정양식)

※ PT심의 발표자료는 1차 행정심의 이후 별도 제출 안내 예정

5. 지원심의

● 심의방법

- 1차 행정심의 : 신청자격, 필수서류 제출 여부 등 행정사항 예비검토
- 2차 심의위원회 심의 : 심의기준에 따른 전문가 서류 및 PT 심의

구 분	내 용	비 고
1차 행정심의	신청자격 및 필수서류 제출여부 검토	미충족 시 탈락처리
2차 심의위원회 심의	심의위원 서류 및 PT 심의	70%
	2021년도 지원사업 행정평가	30%

● 심의기준

1) 상주단체 : 60점

심의 세부항목	심 의 기 준
공연장과 협력 프로그램 운영계획 (25)	· 프로그램의 우수성 - 프로그램의 참신성과 독창성, 차별성, 완성도 - 단체의 역량으로 예측 가능한 예술적 완성도 - 해당분야에 미칠 파급효과, 예상 기여도 · 실현 가능성 - 공연장 여건에 맞는 프로그램 여부 - 공연장의 계획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여부 · 지역과의 협력성 - 지역주민의 수요 및 주변지역 반영 계획의 우수성 - 지역민 유치 마케팅 계획의 우수성 · 타 지역 진출 계획의 우수성
협력 의지 및 노력도 (10)	· 공연장과 매칭 현황 - 공연장과 상주 협약 체결 여부 - 공연장에서 희망하는 조건 충족 여부
창작역량 및 활동실적 (15)	· 최근 3년간 공연 및 수상실적 - 창작활동 실적 및 레퍼토리 구축 실적 - 각종 대회 및 예술제 참가, 수상실적 - 각 기관별 지원금 수혜 내역 및 사업 수행실적 - 관객개발 성과 · 단체에 대한 외부평가 - 언론 및 예술전문지 공연평 등
조직역량 (10)	· 신청 주체로서의 조직 운영 역량 - 전문예술법인(단체) 지정 또는 사회적기업 여부 - 보유 인력(예술가, 행정가 등) 및 협력 인력 현황 - 단체의 조직운영 및 경영상태

2) 공연장 : 40점

심 의 기 준	심 의 내 용
상주단체와 협력 프로그램 운영계획 (15)	· 프로그램 운영 계획의 적절성 - 공연장 여건 및 성격에 맞는 프로그램 계획 여부 - 관객개발 프로그램 계획의 적절성 · 프로그램 실현가능성 - 예산 및 자원 확보 여부 - 기타 유사 사업의 추진 실적과 성과 · 공연장 가동률 제고 계획 - 연간 가동률 향상 계획(전년도 실적 대비 향상)
협약단체 지원계획 (10)	· 상주여건 제공 - 공연단체에 상주 공간(사무실, 연습실 등) 무상 제공 여부 - 공연단체에 공연장 무료 대관 여부 · 상주단체와 적극적 협력 여부 - 상주단체와의 협업 의지와 노력의 정도
기획 및 홍보 마케팅역량 (5)	· 인적역량 - 홍보· 마케팅· 기획 인력 보유 현황 및 계획 · 공연장의 활동실적 - 기획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· 마케팅 실적
시설 및 운영 역량 (10)	· 시설 및 운영 현황 - 객석규모, 무대시설 현황, 부대시설 등 - 가동률, 객석 점유율, 기획프로그램 제작비율 등 · 인력현황 - 무대시설 및 전문기술인력 보유 현황

6. 결과발표

● 발표일정

- 2022년 3월 초 예정

● 발표방법

- 울산문화재단 누리집 “공모 및 입찰” 게시판 게재

7. 문의처

- 예술지원팀 052-259-7951